

석탄가공업 [] 연탄제조업
[] 기타 가공탄제조업 등록증

등록번호 제 호

상 호 또 는 명 칭		
대 표 자 성 명		생년월일
제조시설 소재지		
저탄장 소재지		

시설규모 등	생산시설			시간당 생산능력	저탄장		철도인입선 유무
	운전기		그 밖의 시설				
	탄기	대	대		면적	m²	
	탄기	대					
	계		대		저탄능력	톤	
품질분석시험시설							
그 밖의 참고사항							

「석탄산업법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- 「석탄산업법」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석탄산업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석탄산업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「석탄산업법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「석탄산업법」 제22조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폐업(휴업, 재개)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